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사건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16. . . 공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의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9), 10) 사건”을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현행과 같음)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